

「철도사업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구권 광역전철 여객
운임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
대구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

<교통카드 기준>

구 분		지 정	비 고
기본	운임	1,500원	
	거리	10km까지	
추가운임		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	
시계외운임		경북북부 지역(구미, 칠곡), 대구지역, 경북남부 지역(경산) 중 두 지역 이상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: 200원 추가	

- ※ 1회권 이용 시 200원 추가
- ※ 10km이내 이용 시 시계외운임 면제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